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40

발의연월일: 2021. 4. 30.

발 의 자: 강민국 · 김영식 · 허은아

이헌승 · 정동만 · 김용판

권명호 · 윤한홍 · 서일준

윤창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남 진주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2박3일 동안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 가 발생함.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는 3일간 맡 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와 논란이 됐음. 이에, 반려동물을 대 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 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.

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돌파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상황에서,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. 이에,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,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종사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렀을 경우,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

는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등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4항제4호 단서 중 "5년으로"를 "7년으로"로 한다.

제34조제4항제5호 단서 중 "5년으로"를 "7년으로"로 한다.

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가 제1항제1호, 제2항 제1호·제1호의2 또는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물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 례) 제33조제4항제4호와 제34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

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영업의 등록) ① ~ ③	제33조(영업의 등록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	
른 등록을 할 수 없다. 다만,	
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	
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	4
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	
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	
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	
경우. 다만, 제8조를 위반하	
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	
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	
된 날부터 <u>5년으로</u> 한다.	<u>7년으로</u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영업의 허가) ① ~ ③	제34조(영업의 허가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	
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	5

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경우. 다만, 제8조를 위 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<u>5년으로</u> 한다. 제46조(벌칙) ① ~ ⑤ (생 략)

<신 설>

<u>7년으로</u>
제46조(벌칙) ① ~ ⑤ (현행과
같음)
<u>⑥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</u>
영업을 하는 자가 제1항제1호,
제2항제1호·제1호의2 또는 제4
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

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

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